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17회 임시회 (2018. 1. 2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운 영 위 원 회

전문위원 송인수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#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1. 22.(월)
- 나. 제 출 자 : 송병길 의원 외 9인

### 3. 운영위원회 회부일자

- 2018. 1. 23.(화)

### 4. 관련근거

- 『지방자치법』 제22조, 제38조, 제132조

### 5. 개정이유

- 마포구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, 쟁송사건의 소송수행, 의안 심사,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6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직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  - ▶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를 규정하고,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. (안 제2조)

나. 고문의 정원 위·해촉 사항 및 임기(안 제3조~제6조)

- ▶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은 의장이 구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·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. (안 제4조)
- ▶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, 해촉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.(안 제5조)
- ▶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)

다. 자문요청 등(안 제7조)

라. 입법·법률고문 참가 회의 개최(안 제8조)

마. 입법·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 지급 (안 제9조)

바. 입법·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위임 (안 제10조)

## 7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마포구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, 의안 심사, 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, 정원, 위·해촉에 관한 사항, 임기, 고문료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입법·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미비점이 없다고 사료되며,
- 이에 본 조례안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의회의 입법·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,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19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
- 이에 우리 의회도 조례로 제도화 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바,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## 서울시 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현황

(2018.1.16 現在)

| 연번 | 의회명  | 제정  | 시행일     | 정원     | 임기 | 고문료  | 비고         |
|----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|
| 1  | 종로구  | 제정  | 2008.11 | 3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2  | 용산구  | 제정  | 2007.6  | 3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3  | 성동구  | 제정  | 2007.2  | 2명 이내  | 2년 | 15만원 |            |
| 4  | 성북구  | 제정  | 2017.7  | 3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5  | 광진구  | 제정  | 2007.3  | 3명 이내  | 2년 | -    |            |
| 6  | 중랑구  | 제정  | 2015.10 | 3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7  | 강북구  | 제정  | 1997.12 | 4명 이내  | 없음 | 15만원 | 규정         |
| 8  | 도봉구  | 제정  | 2003.12 | 3명 이내  | 2년 | 15만원 |            |
| 9  | 노원구  | 제정  | 1997.1  | 2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10 | 은평구  | 제정  | 2006.12 | 3명 이내  | 2년 | 15만원 |            |
| 11 | 서대문구 | 제정  | 2014.11 | 3명 이내  | 2년 | 15만원 |            |
| 12 | 양천구  | 제정  | 2009.5  | 2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13 | 강서구  | 제정  | 2012.2  | 3명 이내  | 2년 | 15만원 |            |
| 14 | 금천구  | 제정  | 2011.3  | 2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15 | 동작구  | 제정  | 1999.6  | 3명 이내  | 2년 | 15만원 |            |
| 16 | 서초구  | 제정  | 2002.3  | 3명 이내  | 2년 | 25만원 |            |
| 17 | 강남구  | 제정  | 2000.3  | 3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18 | 강동구  | 제정  | 1999.10 | 4명 이내  | 2년 | 15만원 |            |
| 19 | 영등포구 | 제정  | 2013.9  | 3명 이내 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20 | 서울시  | 제정  | 1998.9  | 20명 이내 | 2년 | 20만원 |            |
| 21 | 중구   | 미제정 |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입법자문운영     |
| 22 | 동대문구 | 미제정 | -       | -      | -  | -    |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|
| 23 | 마포구  | 미제정 |         |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|
| 24 | 구로구  | 미제정 | -       | -      | -  | -    |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|
| 25 | 관악구  | 미제정 | -       | -      | -  | -    |            |
| 26 | 송파구  | 미제정 | -       | -      | -  | -    |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|

■ **조례** : 제정 : 19개구, 미제정 : 6개구 (마포구, 중구, 동대문구, 관악구, 송파구, 구로구)

■ **정원** : 2명 이내 : 4개구, 3명 이내 : 13개구, 4명 : 2개구

■ **임기** : 2년 (18개구), 없음 (1개구)

■ **고문료** : 15만원 : 8개구, 20만원 : 9개구, 25만원 : 1개구, 없음 : 1개구

■ **위촉** : 운영위원회 추천 → 의장이 위촉 : 14개구, 의장이 위촉 : 5개구

## 관계 법령

###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2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